

# 고성군 마을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77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05. 02. 정영환 의원 등 9인  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5. 16.  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5. 31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최두임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, 정의, 설치비용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3조)
- 2) 지원대상,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- 3) CCTV 등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#### 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·운영 제한)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「민간분야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」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23호
  - 예고기간: 2024. 5. 8.(수) ~ 5. 13.(월) [5일간]
 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없음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#### 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고성군 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#### 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1조 ~ 제2조)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3조 ~ 제4조)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비용 등의 지원,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, 마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그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5조)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으로,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6조) CCTV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, 마을방범용 CCTV의 운영비 부담을 명확히 하고, 관리 및 정상동작 여부를 위한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### 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마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,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5. 31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